

코로나19 관련 공연예술계 현장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0. 4. 23.(목), 16:30 / 국립극단 판 소극장 스튜디오 1
- (주요내용) 코로나19관련 애로사항 청취, 지원 대책 소개 및 생활방역 의견수렴

시간	내용	비고
16:30~16:35	5' 인사말씀	예술정책관
16:35~16:45	10' 코로나19 공연업계 지원 대책 소개	담당 사무관
16:45~17:15	30'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청취	
17:15~17:35	20' 생활방역 관련 의견수렴	
17:35~17:40	5' 마무리말씀	예술정책관

□ 참석 대상(안)

구 분	소속 및 직위	이 름
정책 지원 (3)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본부장	송시경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장	김혜진
	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정철
주요 협회 (9)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오태근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이유리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임정혁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이사	한승원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방지영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조남규
	한국현대무용협회 사무국장	이은혜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이철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임웅수
공연제작	익스트림씨어터(연극) 대표	임길호
공연기획	대학로발전소(연극) 대표	노희순
	클럽발코니(음악) 대표이사	송희경
공연장	예술의전당 경영본부장	윤동진
	롯데콘서트홀 CS운영팀장	유형선

* (배석자) 한국뮤지컬협회 사무국장 임선진, 대학로발전소(연극) 운영팀장 정아영

□ **예술인 개인**

지원대책	내 용	지원현황	비고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 연기된 예술인 또는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인하: 2.2%→1.2%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 용자상한액: 500만원→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30억원, 355건 집행 완료(~3.31.) ■ (2차) 40억원 접수(4.1~ 4.13), 심사(4.14~), 집행(4.28~) * (신청현황) 885건, 83억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 중단 위기 예술인(코로나 피해 가점 2점) *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 소득의 120%이하인 예술인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300만원 일시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360억원, 총 12천명 지원 예정 - 상반기 신청(3.2~20) 완료 * (신청) 14,803건 - 심의(4월) 후 교부(5.13 예정) 	.하반기 (7월 개시 예정)
청년예술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 문예기금 지원금을 받지 않은 예술가 * (지원장르)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 (최대 25백만원, 추가150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변경(4.17)하여 '20년 당초 10억원에서 10억원 증액, 총 20억원 * 공모(3.2~20) 결과, 1,287건 접수되어 예산 추가 증액함 	5월 심의 후 6월 교부
심리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완료 전이라도 지원 		

□ **공연장**

지원대책	내 용	지원현황	비고
소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소규모 등록 공연장 대상 (전국 430여 개소, 300석 미만)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제(2통), 소독제 분무기(2대, 약제 1통 포함), 초미립자 분사기(1대, 약제 1통 포함), 방역 안내 포스터(1매) -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등 * 공연장 수요에 따라 장비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2.8억원 ① 손소독제, 소독제 분무기, 방역 안내 포스터: 2.14.~ 현재(438개소 지원) ② 초미립자 분사기: 2.25.~ 현재(392개소 지원) ③ 열화상 카메라: 2.27. * 한국소극장협회(4대) 및 전국 6개 지회(경기·강원·대구·대전·광주·전북 각 1대) 보급 	비접촉식 체온계는 5월중 보급예정 (200개 예정)
공연예술 특성화극장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소극장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유지비 지원 * 개소당 최대 2천만원, 200개소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변경(4.17)하여 '20년 당초 9.5억원에서 40.5억원 증액, 총 50억원 	.세부사업계획 수립중

□ 공연단체 · 기획사

지원대책	내 용	지원현황	비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관 공연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진행된 공연 작품의 대관료 우선 지원(1~2차) (1단체당 최대 3천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로 미환불된 대관 금액도 포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코로나19 대응 개선사항] ▲객석 제한 규정(500석 이하) 한시적 폐지, ▲라이선스뮤지컬 지원 포함, ▲제출 서류 축소(13종→5종), ▲심사간소화</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변경(4.17)하여 '20년 당초 20억원에서 40억원 증액, 총 60억원 - (1차 공모) 4.27~5.6 - (2차 공모) 5.7~5.19 * 총 5차까지 공모 예정, 1차 공모 후 일정 재조정 가능 * 미환불 대관 금액 지원은 1~2차 한시 운영 예정 	·주관처 (한국소극장협회)
공연제작비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작품의 초연, 재공연에 필요한 제작비 및 기획·연구 등 비용 지원 * 어린이·청소년 공연 및 일반공연, 2천만원~2억원 차등지원, 총 110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변경(4.17)하여 '20년 당초 97.73억원에서 56억원 증액, 총 153.73억원 	·세부사업계획 수립중
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공연 영상 생중계 제작비 지원(15건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기금 변경(4.17)하여 '20년 당초 1억원에서 3억원 증액, 총 4억원 	·세부사업계획 수립중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진정된 후 기초공연예술 작품에 대한 관람 할인권 지원하여 공연수요 진작 * 예매처별 8천원×약 144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억원 	·세부사업계획 수립중

□ 기타 사항

지원대책	내 용	비고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인정 확대) 사업추진을 위해 기 지출한 금액 정산 인정 및 집행예정 금액*에 대해서도 정산 인정 * 제작진·출연자 사례비 선금, 기 제작된 물품(홍보물), 위약금 등 ■ (사업포기 불이익 예외) 향후 문예기금 지원 불이익 없음 ■ (사업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협의를 거쳐 연장 	문예기금 보조사업 FAQ 참조
코로나19 전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시각예술 분야 전담 상담창구 운영(02-708-2261) - 전화·온라인 상담 및 범정부 지원대책 종합 안내 (1,057건) ■ 예술인 복지 사업 문의(02-3668-0200)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업 지정고시(3.16) ■ 휴업 시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휴업수당의 90%)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개인 지원 (주요대책 발췌)

지원대책	내 용	비고
<p>긴급복지 지원제도</p>	<p>■ 지원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p> <p>[코로나19 대응 개선(3.23~7.31 한시)] ▲ 재산기준 완화(대도시 188→257백만원, 중소도시 118→160백만원, 농어촌 101→136백만원), ▲ 지원횟수 제한 폐지(2년 이내 재지원 가능), ▲ <u>위기상황 인정 사유 신설(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추가, 4.7)</u></p> <p>■ 지원내용 - <u>1인가구 45만원 ~ 4인가구 123만원 (최대 6개월)</u></p> <p>■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유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온라인) 복지로</p>	<p>보건복지부</p>
<p>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4.2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포함)</p>	<p>■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안전망 밖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p> <p>■ 지원대상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u>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u>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원조건이 다름</p> <p>■ 지원내용 - <u>50만원 (최대 2개월)</u>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2천억원) - <u>50만원 (최대 3개월)</u>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조원) 추가(4.22)</p> <p>■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유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온라인) 복지로</p>	<p>고용노동부</p>
<p>취업성공 패키지 및 구직촉진수당</p>	<p>■ 지원개요 -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 대상 '(1단계)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20~25만원) → (2단계) 직업훈련(훈련비 40만원, 6개월) → (3단계) 취업알선(구직촉진수당 50만원, 3개월)' 맞춤형 제공 *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만 지급</p> <p>■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등 2만명→5만명 지원 확대(4.22) - <u>프리랜서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요건 개선* 및 규모 확대</u></p> <p>[코로나19 대응 개선(3.3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범위 확대 (구직활동 뿐 아니라,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도 인정)</p> <p>■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p>	

□ 사업체 지원 [주요대책 발취]

지원대책	내 용	비고
<p>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내용</p>	<p>■지원대상 - 공연업</p> <p>■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90% 지원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무급휴직 즉시 지원, 50만원, 최대 3개월, +0.48조원, 4.22 발표) -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못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 자금 용자사업 신설(+0.1조원, 4.22 발표) - 직업훈련 지원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등) -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등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 자금 용자 지원 (비정규직·특고는 소득요건 미적용, 1,103억원)</p> <p>■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p>	<p>보건복지부</p>
<p>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유예</p>	<p>■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p> <p>■산재보험 납부유예(3개월) 및 감면(6개월) ①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②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p>	<p>기획재정부</p>
<p>정책금융</p>	<p>■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 - (한도) 1천만원 - (금리) 1.5% (최대 5년)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042-363-7130</p> <p>■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한도)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 (금리)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 - (문의)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p>	<p>소상공인 진흥공단</p>